

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8. 31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8. 30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4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치매병원을 찾는 이용자와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“치매요양병원”을 “노인요양병원”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변경
- 본문 중 “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”을 “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”으로, “치매요양병원”을 “노인요양병원”으로 자구를 수정함.(안 제 1조 내지 제4조, 제6조,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우리 정서상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, 치매환자는 노인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이용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“치매요양병원”을 “노인요양병원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5. 제정근거

- 地方自治法 제135조

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.

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.

6. 참고자료

-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건립 현황

- 위치 : 거창읍 송정리 일원
- 규모 : 건물연면적 1,283㎡(388평), 지하1층 지상4층
- 공사기간 : 2004.12 ~ 2005.11
- 사업비 : 1,853,500천원